

예산총칙

2021년도 본예산

제 1 조 2021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| 구 분 | 세입·세출예산총액 | 일시차입한도액 |
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|
| 합 계 | 642,635,334 | 19,279,060 |
| 일반회계 | 582,430,486 | 17,472,915 |
| 특별회계 | 60,204,848 | 1,806,145 |
| 공기업특별회계 | 29,323,147 | 879,694 |
| 상수도사업특별회계 | 29,323,147 | 879,694 |
| 기타특별회계 | 30,881,701 | 926,451 |
|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| 742,601 | 22,278 |
| 자활기금특별회계 | 2,385,488 | 71,565 |
|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| 1,963,000 | 58,890 |
|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| 285,900 | 8,577 |
| 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| 220,000 | 6,600 |
| 주차장관리운영특별회계 | 1,930,809 | 57,924 |
| 수질개선특별회계 | 23,353,903 | 700,617 |

제 2 조 세입·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"세입·세출 예산"과 같다.

제 3 조 (채무부담행위) : "해당없음"

제 4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"계속비사업조사"와 같다.

제 5 조 (명시이월사업) : "해당없음"

제 6 조 일반회계 일반예비비는 1,500,000천원으로 하고, 재해·재난목적예비비는 2,224,740천원으로 한다.

제 7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(공기업특별회계 포함) 지방채차입한도액은 45,4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.